

광주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132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나976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1326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 선고 2015.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전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33분의 925 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1,633분의 708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1,633분의 925 지분에 대한 2014. 2. 21.부터 2015. 3. 15.까지의 임료는 26,734,36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3.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임료는 13,199,840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633분의 925 지분에 대한 2014. 2. 21.부터 2015. 3. 15.까지의 임료 26,734,360원 중 2분의 1인 13,367,18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3.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임료 13,199,840원 중 2분의 1인 6,599,920원 합계 19,967,100원(= 13,367,180원 + 6,599,920원)이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67,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7.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장구